

産學協同 活性化를 위한 組織體系

李 茂 根

(서울大 農業敎育科)

1. 序 論

산학협동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의 교육계와 산업계에 1960년대 초부터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산학협동의 목적이나 유형, 내용 또는 교육 수준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매개하며 지원해 줄 수 있는 綜合的·體系的 機構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 산학협동이 그 중요성에 비추어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산학협동이 과거보다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전반적인 協同水準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조직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활동내용도 대학과 대기업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학과 산업체 간에는 산학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추진 등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은 기술개발 수요가 있어도 해당 전문가를 찾지 못하는 반면, 대학은 기업과의 접촉기회 부족으로 산업기술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산학협동에 관한 조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산학협동 활성화 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기구의 기능과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2. 관련 法規 및 組織의 실태

産學協同 活性化를 위하여 그동안 제정된 산학협동 관계 법규와 조직도 상당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업교육진흥법 및 동 시행령,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수산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산학협동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내의 산학협동위원회 등이다.

1) 産業敎育振興法 및 同施行令

산업교육진흥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면 농, 공, 상, 수·해양, 관광 계열의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들은 일정기간 現場實習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계열학과 중 일부만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실습기간도 대부분 단축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산업체는 일시에 많은 학생을 수용하여 현장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수용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을 계획하고 지도할 전담기구가 조직·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실습의 실효

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77년에 개정된 산업교육법에 의하면 중앙산학협동심의회와 산업교육심의회를 조직·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중앙산업교육심의회를 조직·운영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산학협동의 조직·운영이有名無實하다.

2) 農業產學協同審議會 규정

농업산학협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이 '71년 대통령령 제5889호로 제정·공포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농업교육과 농사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청 기관과 농과계 학교, 농업단체 및 영농자 간에 農業產學協同體制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기술의 개발과 농촌 근대화 촉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 법에 의하여 농업교육과 연구가 어느 정도 상호협조 체제 하에 실시되고 있지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농과계 학교 간의 유기적 협조에 초점을 두고 있어 농업분야의 '産'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관련 산업계, 농민단체, 농업관계기관들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마치 기관 간의 협조체제로 인식하기 쉽다. 또한 심의회의 長을 농촌진흥청장으로 제한함으로써 농업산학협동 원태의 취지를 확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농과대학 교수는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에 겸직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관 및 지도관은 농업계 대학의 겸직교수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상호人的 交流를 하게 되어 있으나, 대학측의 상아탐적 권위의식에 의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水産產學協同審議會 규정

수산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은 '77년 대통령령 제8781호로 제정·공포되었는데 그 실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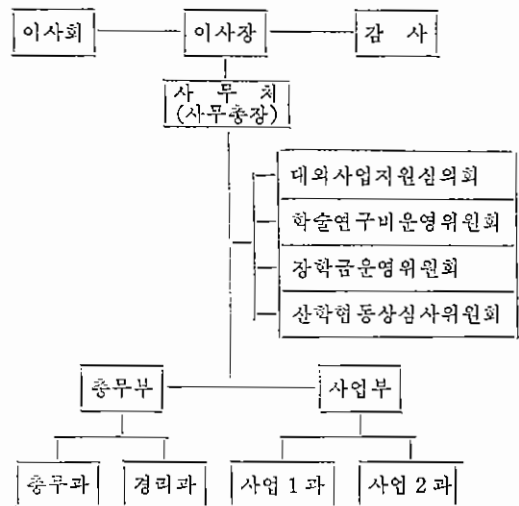
4) 産學協同財團

산학협동재단은 산학협동의 기본원리와 우리나라 산학협동의 발달과정을 고찰해 볼 때 우리

나라 산학협동의 代表的 機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재단은 우리나라 경제발전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학협동이 결실히 요청되고 강조되던 '70년대 초에 한국무역협회와 그 회원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이들은 지속적인 수출신장과 중화학공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企業의 社會的 責任 수행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산업계와 학계 간의 협동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그 결과 '74년에 학계의 각종 학술연구를 지원하며, 근로자 자녀들을 비롯한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취지 아래 산학협동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취지 하에 설립된 산학협동재단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연구비 지원 : 산학협동과 응용 촉진을 위하여 대학교수의 우수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 ② 장학금 지급 : 고급두뇌 양성을 위하여 우수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③ 학회 지원 : 학문발전과 학회육성을 위하여 학회지 발간을 지원한다.
- ④ 학술회의 지원 : 산학협동과 경제발전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를 지원한다.
- ⑤ 국제교류활동 지원 : 한국의 경제발전과 무역진흥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를 지원한다.
- ⑥ 기타 산학협동활동 지원 : 이상의 사업 이

〈그림 1〉 산학협동재단의 조직



외에 국내 산학협동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산학협동상 시상, 산학협동지 발간과 배포, 산학협동 간담회, 산학협동 견학단 파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산학협동재단의 조직은 그동안 부분적인 개편을 거쳐 현재 앞의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5) 韓國科學財團

한국과학재단은 '76년 12월 22일 한국과학재단법이 공포된 후 '77년 5월 18일에 개원하였다. 그후 '88년 8월 1일에는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를 부설하였다. 이 재단은 주로 대학의 연구인력에게 基礎研究費를 지원하고, 우수한 과학기술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國家研究開發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직을 보면 이사장 아래에 조사분석실, 연구환경조성사업단, 기술공여사업소,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가 독립되어 있고, 사업부서로 연구진흥부, 학술조성부, 국제협력부, 관리부 등 4개 부서가 사무총장의 관할하에 있다. 인원은 '90년 현재 80명이다.

한국과학재단은 산·학·연 협동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학·연·산 研究交流會'를 개최하고 있다. 이 교류회는 학계, 연구소, 산업계의 공동관심 연구영역에 대한 정보교환, 연구계획 및 결과의 발표를 통한 지식교류의 계기를 마련할 목적으로 '89년 4월부터 조찬회 형식으로 시작하였다. '90년부터는 조찬회 형식을 탈피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에 개최하며, 참여기회의 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90년 5월 재단 청사 준공으로 대회의실에서 보다 안정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충실한 연구교류회가 진행되어 산·학·연 연계사업의 구체적 실천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사업은 학술조성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발표된 자료는 따로 모아 『학·연·산 연구교류회 발표내용 요약집』으로 발간하고 있다.

6) 韓國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의 産學協同委員會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87년부터 산학

협동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있는데 '87년 11월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개발 워킹 개척을 시발로 하여 매년 산학협동에 관한 학술발표회를 갖고 있다. 현재 1명의 위원장과 1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산업계, 학계, 연구소 및 기타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의 업무, 기능, 회의개최에 관한 뚜렷한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機構 설치 및 기존 組織의 강화방안

1) 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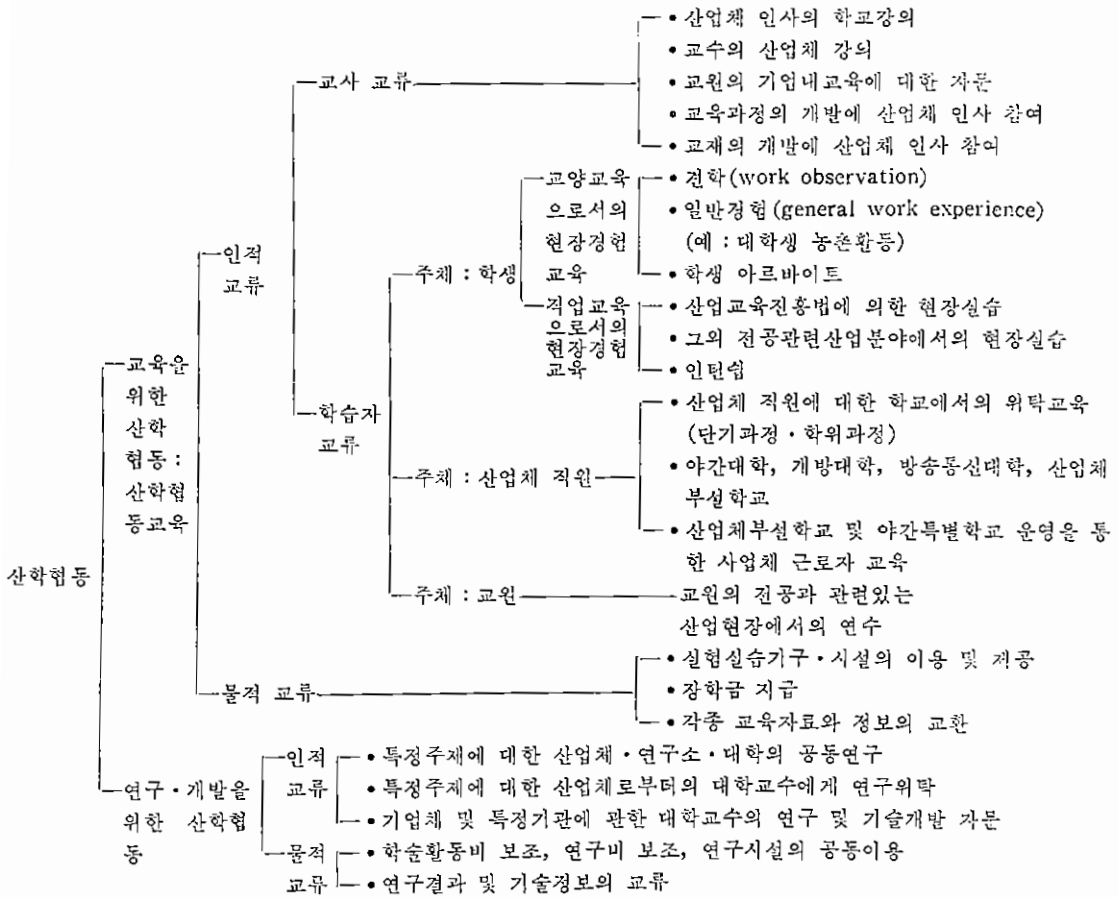
산학협동 활성화를 위한 조직강화 방안에는 조직의 신설과 기존 조직의 육성·강화가 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산학협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뒤의 <그림 2>, <그림 3>과 같은 산학협동의 유형과 종합적인 모형에 담겨진 내용을 담당할 기능이 있어야 한다.

산학협동기구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기대를 조사한 결과 뒤의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에서 보면 산학협동기구의 주된 기능으로는 산업계와 학계의 협동을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의 개발과 위탁,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 지원인사의 인적 정보, 자료 제공, 산업기술정보의 보급, 산업계와 학계 간의 교육적 측면에서의 매개역할 등의 항목에 대하여 학계, 산업계, 매개기관 모두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그중에서도 학계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매개역할을, 산업계는 산업기술정보의 보급을, 매개기관은 연구과제의 개발과 위탁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제안하였다.

2) 組織

앞에서 제시한 산학협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機構가 조직될 경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의 기구를 보완·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기구를 신설할 경우, 理想的 산학협동 機構로서의 '산학협동센터'의 모형과 각 부서의 주요기능은 각각 뒤의 <그림 4>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중앙산학협동심의회는 뒤의 <그림 5>에 제시된 기관별·산업별·기능별 대표자로 구성

〈그림 2〉 산학협동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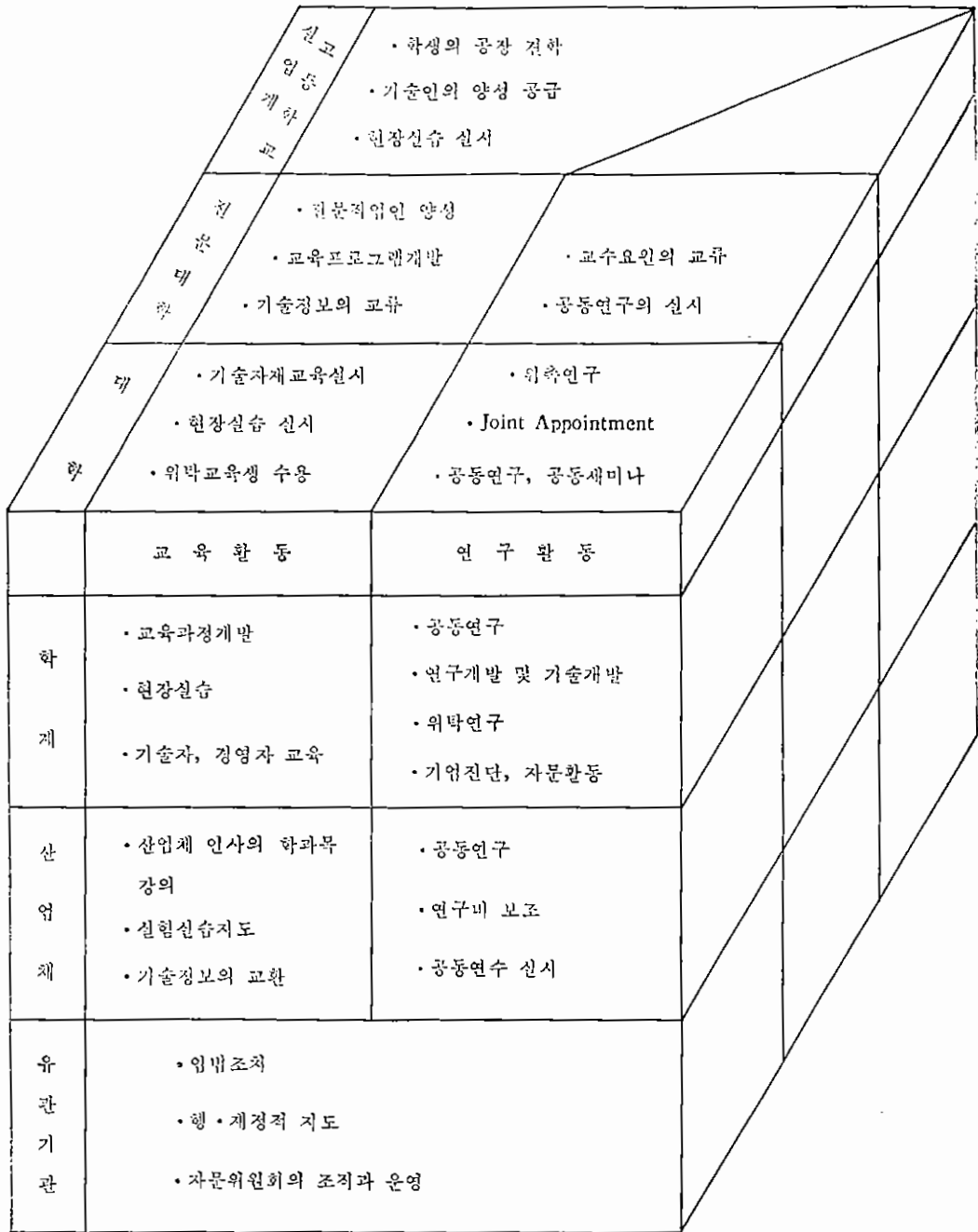
〈표 1〉 산학협동센터의 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활동의 중요도

활동 내용	응답자			
	학계 (N=26)	산업계 (N=28)	매개기관 (N=36)	계 (N=90)
관련 집단에 대한 산학협동의 중요성 홍보	4.42	4.07	4.39	4.30
산업계와 학계 간의 교육적 측면에서의 매개 역할	4.54	4.18	4.36	4.36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 자원인사의 인적 정보 자료 제공	4.31	4.41	4.39	4.37
산업계와 학계의 협동을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의 개발·위탁	4.46	4.36	4.53	4.46
산업기술 정보자료의 보급	4.15	4.48	4.42	4.36
산학협동에 관한 연구자료의 발간	4.04	4.11	4.09	4.08
산학협동 자체에 관한 이론적·실제적 연구	3.77	3.57	3.75	3.70
산학협동 관계자에 대한 연수	3.81	3.57	3.92	3.78
산업계의 요구도가 높은 특정분야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4.08	4.04	4.28	4.14
산학협동관련 세미나 개최	4.15	3.86	4.25	4.10
장학금 지급	3.92	3.46	3.86	3.76
대학교수 등에 대한 연구비 지급	4.15	3.61	3.89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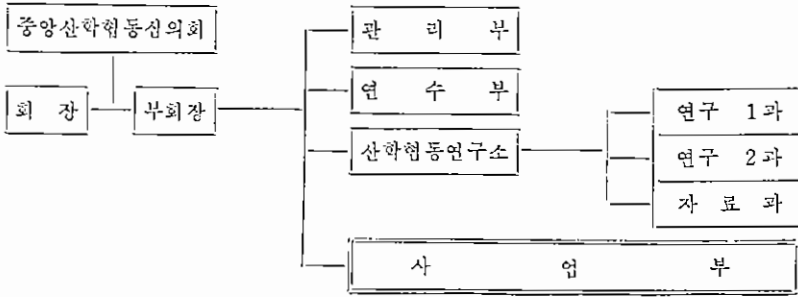
* 주: 각 활동내용에 대해 다섯 가지로 응답하도록 했다(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 자료: 이무근·정철영·김재식·김진순,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협동센터의 모형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 연구』, 제10권 제1호, 1991, pp.1~27.

〈그림 3〉 산학협동의 종합적인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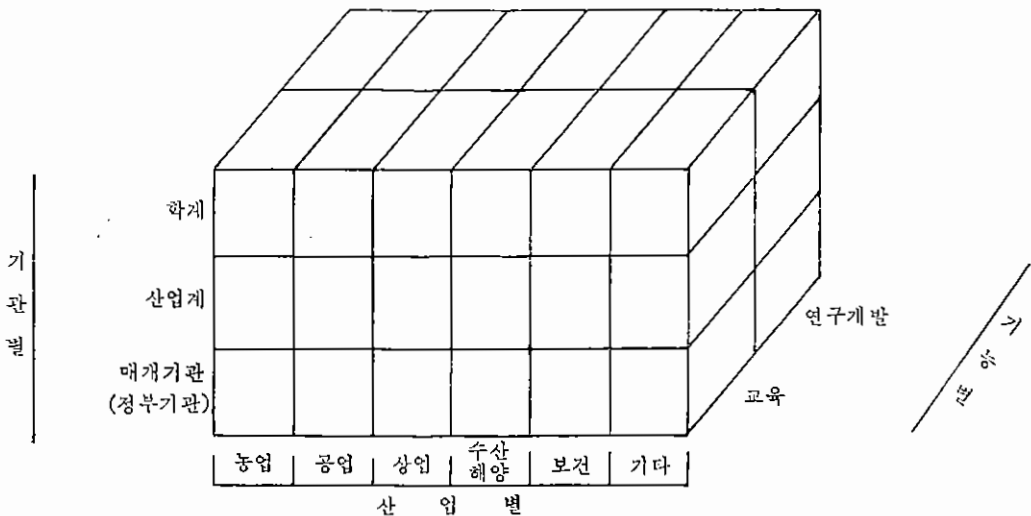
〈그림 4〉 이상적인 산학협동센터의 조직



〈표 2〉 이상적 산학협동센터 각 부서의 주요 기능

관 리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협동 정책 및 기획의 조정, 심사, 분식에 관한 업무 예산, 행정관리, 법제에 관한 업무 산학협동센터의 일반행정업무(총무, 경리)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 산학협동의 의의, 중요성, 필요성 등에 관한 홍보 업무 	
연 수 부	<p>학계, 산업계, 그리고 관련 정부나 매개기관에서 산학협동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각종 내용별(현장실습, 위탁교육, 공동연구 등)·분야별(농업, 공업, 상업 등)로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 운영</p>	
산학협동연구소	연구 1과	현장실습, 위탁교육 등 산학협동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실시 방안의 연구
	연구 2과	공동연구, 위탁연구 등 산학협동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실시 방안의 연구
	자 료 과	산학협동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수집·종합·분류하여 보관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와 신산 책과 연구보고서에 관한 회지와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배포
사 업 부	<p>산학협동과 관련된 활동들이 효율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학협동의 세부활동을 계획, 운영, 평가</p>	

〈그림 5〉 산학협동센터 사업부가 포괄해야 할 3차원(대상기관, 산업, 기능)



되어야만 한다.

위의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事業部의 조직이다. 사업부의 기구를 조직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산학협동센터의 사업부는 산학협동의 대상기관, 기능, 산업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첫째, 사업부는 학계, 산업계, 메계기관 등 모든 대상기관을 포괄해야 한다.

둘째, 사업부는 교육을 위한 산학협동(현장실습, 위탁교육 등)과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동(공동연구, 위탁연구 등)의 기능을 포괄해야 한다.

셋째, 사업부는 모든 산업분야(농업·공업·상업 등)를 포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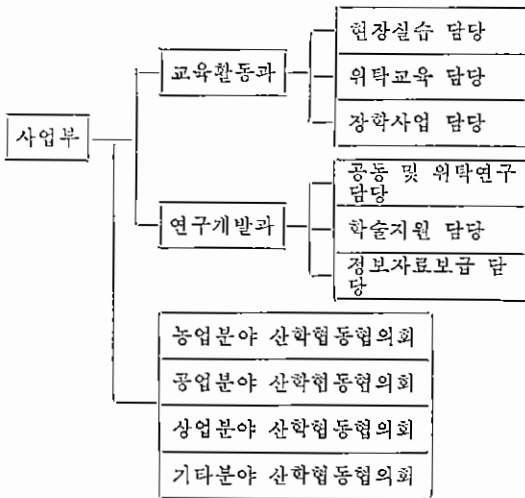
이상의 대상기관, 기능, 산업을 종합하면 앞의 <그림 5>와 같다.

대상기관, 산업, 기능을 포괄하는 사업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A안 : 學界의 대다수 의견

학계의 대다수 의견은 부서는 기능별, 협의회는 산업별로 기구를 조직하는 것으로 아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사업부의 A안 (부서는 기능별, 협의회는 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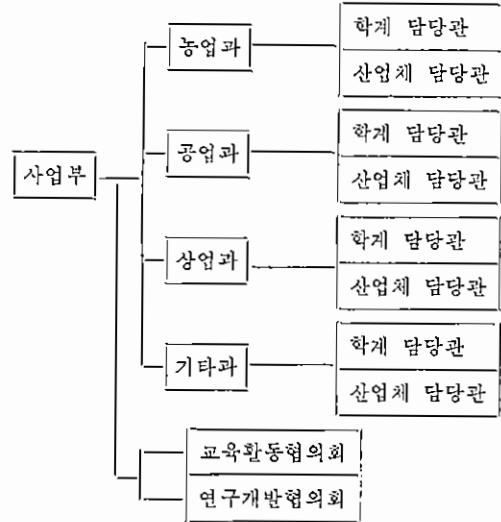


② B안 : 産業界의 대다수 의견

산업계의 의견은 부서는 산업별, 협의회는 기

능별로 기구를 조직하는 것으로 아래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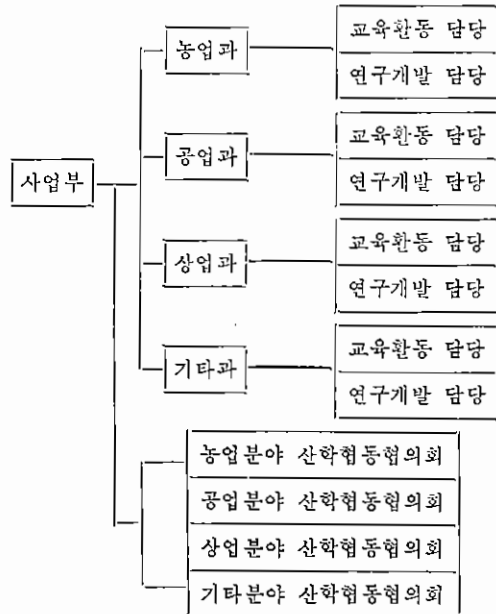
<그림 7> 사업부의 B안(부서는 산업별, 협의회는 기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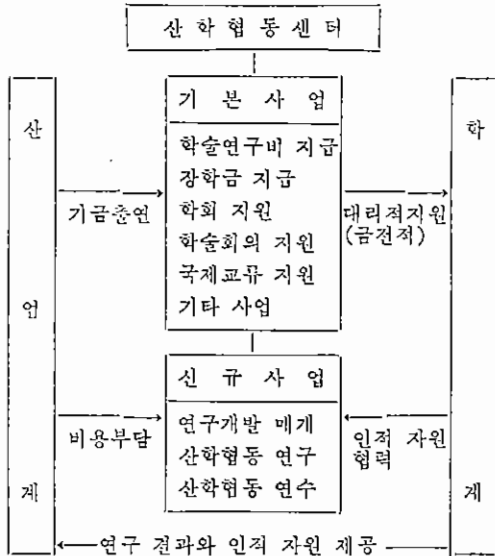
③ C안 : 媒介機關의 대다수 의견

매개기관의 대다수 의견은 부서와 협의회 모두 산업별로 기구를 조직하는 것으로 아래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사업부의 C안 (부서와 협의회 모두 산업별)



〈그림 9〉 산학협동재단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동 센터의 모형



한편, 現實的 산학협동 機構 모형은 산학협동 재단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동센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74년에 설립된 산학협동재단은 그동안 무역업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에서 마련한 기금을 관리·운영하여 학술연구 지원과 장학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즉, 이미 확보된 기금의 운영을 통해 얻어진 수익을 가지고 산업계를 대리하여 학계에 대한 연구지원과 장학금 지급업무를 수행해 왔다. 재단의 성격상 산업계와 학계 간의 매개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활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산학협동이란 '산업계와 학계 간 상호 발전, 나아가 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인적·물적 및 기타 가용자원을 교육·연구 등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교류하는 체계적 협동관계'라고 하는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産學協同財團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그 활동 영역을 확장하여 명실상부한 산학협동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현재의 산학협동재단이 연구비 지원이나 장학금 지급과 같은 소극적 또는 수동적 자세에서 적극적·능동적인 방향으로 자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단 스스로가 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계와 학계 간의 매개, 산학협동 자체에 대한

조사연구와 연수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사업 범위에 대한 제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산학협동재단을 확대·개편하는 모형을 제시해 보면 옆의 〈그림 9〉와 같다.

① 研究開發 媒介機能의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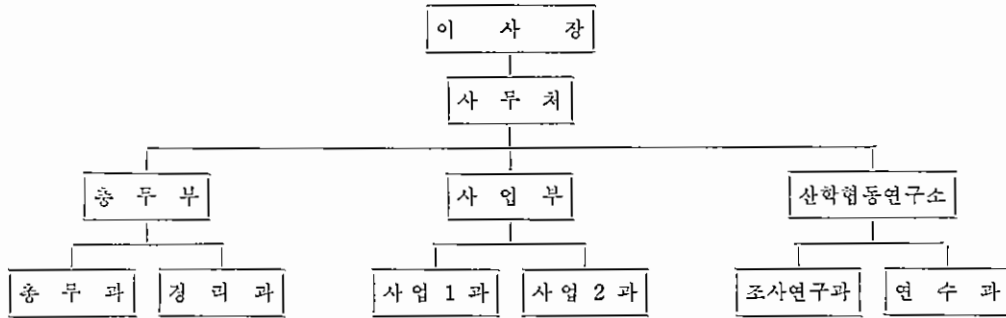
현재 산업계는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70%를 투자하고, 전체 연구인력의 50%를 보유하고 있으나 박사급 이상의 고급 연구인력은 4.5%에 불과하다. 반면 대학은 박사급 연구인력의 80%를 점하고 있으나 교육 및 기초이론 치중, 연구실비 및 비용 부족 등으로 산업계와의 연계가 미흡한 편이다. 현대의 산업기술은 그 개발의 주기가 급속하게 단축되고 있으며, 기술의 진보 속도가 경기 순환보다 빠르게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단위기술보다는 복합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집약 상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기초기술이 산업에 응용되는 기술연관효과가 증폭됨에 따라 연구개발주체 단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대형의 복합과제가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産業競爭力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주체 간의 協力體制 구축이 필연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산학 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촉진 등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채널의 부재로 인하여 기업은 기술개발 수요가 있어도 해당 전문가를 찾지 못하는 반면, 대학은 기업과의 접촉 기회 부족으로 산업기술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학협동센터가 산학협동 연구에 필요한 자금, 시설, 인력, 정보, 기자재 등에 대한 교류의 촉진과 지원을 주선·조정하는 中心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즉,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 자원인사의 인적 정보 자료의 제공, 산업계와 학계의 협동에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의 중합, 산업기술 정보 자료의 보급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재되어 있는 연구개발 능력을 組織化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② 産學協同에 대한 調査·研究 및 研修

기능의 활성화 차원에서 산학협동센터 내에 산학협동 자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한 專擔

〈그림 10〉 산학협동재단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동센터 조직안



部署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산학협동 실태, 분야별 산학협동의 당면과제와 개선방향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관심있는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산학협동에 관한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동에 관한 學術發表會의 개최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산학협동 담당자의 실천력과 운영능력 개발을 위한 산학협동 연수과정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부문에 대한 研修機會 제공을 위한 연수 전담부서의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수원에는 ① 산학협동 관리자 과정, ② 산학협동 담당교사 과정, ③ 산학협동 오리엔테이션 과정, ④ 현장실습 과정 등을 두어 사례와 토의 중심의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외에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부문에 대한 연수기회 제공을 위한 대안으로, 예를 들어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무역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국제통상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산학협동 자체에 관한 것 이외의 연수 프로그램은 산학협동센터의 설립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산업계의 요구가 크면서도 다른 부문에서는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많은 개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硏修院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산학협동 차원에서 유익할 것이다. 예컨대 기업체 연수원에서 필요로 하는 부문별 강사요원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해 두었다가 기업체 연

수원과 학계인사 간의 교류를 매개시켜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③ 組織과 人員

산학협동재단을 기초로 한 산학협동재단의 모형은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총무부와 사업부 이외에 사무총장 직속으로 산학협동연구소를 두고, 하부에 조사연구과와 연구과를 두도록 한다.

사업 1과에서는 기존 산학협동재단이 수행해 온 연구비 지급, 장학금 지급 등과 같은 사업을 담당하고 사업 2과에서는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계와 학계간 매개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조사연구과의 책임자는 연구위원으로 하고 그 밑에 필요한 연구원을 두도록 하며, 연구과는 산학협동 자체에 대한 연수능 담당자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연수를 전담한다.

특히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 연수는 산업계로부터 연수비용을 받아 운영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산학협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연수사업 중 사회적 수요가 크고 재정적 수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부 연수프로그램을 산학협동센터로 이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연구소장은 산학협동 관련 분야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을 갖춘 인사로 한다. 연구 및 연수 업무를 수행할 요원은 상근과 비상근으로 구분하여, 필수적인 인력은 상근으로 하고 수시로 분야에 따라 필요한 인력은 대학이나 일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선별·위촉하여 비상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그림 11> 현장실습 업무의 흐름도

단계	주체	하	생	교	수 (하 교)	실	습 대	상 기	관
계	현	장	실	습	계	회	화	1. 현장실습에 관한 협의회 개최	6. 현장실습 담당 부서 및 지도 책임자
								2. 현장실습 담당 교수 선정	
회	화	회	회	회	회	회	회	3. 현장실습 대상 실습생 확인 및 요구조사	8. 사진방문 협의 응접
								4. 현장실습에 관한 요구 사항 및 제출	
회	화	회	회	회	회	회	회	5. 현장실습 대상 기관 선정 및 의뢰	10. 현장실습 목표 선정
								11. 현장실습 의뢰 내용 작성	
회	화	회	회	회	회	회	회	13. 현장실습 프로그램 특징	14. 확정된 실습 프로그램 접수
								15.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시	
회	화	회	회	회	회	회	회	16.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수강	17. 현장실습 업체별 학생 배정
								18. 업체에 파견자 통보	
회	화	회	회	회	회	회	회	21. 현장실습 파견업체 통보 받음	22. 학생에게 업체 인솔
								23. 현장실습 업체 도착	
회	화	회	회	회	회	회	회	25. 실습생 도착 영접	26. 현장의 오리엔테이션 실시
								27. 현장의 오리엔테이션 받음	
회	화	회	회	회	회	회	회	29. 실습 프로그램에 따른 실시	30. 순회 지도 실시
								31. 실습일지 최종정리	
회	화	회	회	회	회	회	회	33. 실습에 관한 최종 정리	34. 실습에 대한 종합 토의
								35. 실습생 및 실습 프로그램 평가	
회	화	회	회	회	회	회	회	37. 실습생 및 실습 프로그램 평가	38. 평가의 피드백 및 현장실습 제반내용 및 문서화
								39. 실습기관에 대한 인사편지	

* 자료 : 이무근·손승호·박진규, 『현장실습교육의 활성화 문제와 대책』, 서울 : 한국고등교육연구원, 1990, pp. 67~69.

이다.

그리고 산학협동이 어떤 조직에 의하여 운영 되는 간에 현장실습은 앞의 <그림 11>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産學協同센터의 運營

산학협동센터의 운영 방안은 학계, 산업계, 매개기관 모두 부서보다는 協議會 위주로 운영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산학협동센터의 운영을 위한 財源 확보방안은 민간경제단체의 출연, 정부예산, 자체적인 수익 사업, 학교 및 산업체로부터의 회비 징수 등이 있다. 산업계의 경우는 민간경제단체의 출연보다 정부예산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산학협동센터의 支援 방안은 법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 행정적 지원 등이 있는데 학계, 산

업계, 매개기관 다같이 法的 지원과 經濟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법을 실용성 있게 개정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과 수산산학협동심의회 규정도 그 위원회의 長이 농림수산부장관이 되는 것을 위시하여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산학협동에 관한 정부 부처 간의 조정, 예컨대 교육부, 농림수산부, 노동부 등의 산학협동 관계법령과 기업체 사정이 고려된 중앙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산학협동센터의 參與는 개인 자격 또는 소속 기관 차원에서의 참여가 있는데, 대부분 소속기관 차원보다는 개인 자격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